

의안번호	제 61 호
의결연월일	2020. 5. 18.

논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0년 5월 08일 서원 의원 외 4명
- 나. 회 부 일 자 : 2020년 5월 08일
- 다. 상 정 일 자 : 2020년 5월 18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

2. 제안 설명요지 (제안 설명자 : 최정숙 의원)

제안이유

- 최근 발생한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재난 발생에 따른 소비활동 위축으로 지역사회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현행 『논산시 하수도사용 조례』 제26조제1항제2호의 하수도 사용료 감면규정에는 『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』의 규정에 의한 재난지역으로 규정 되어 있음.
- 이를 『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』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 위기의 경보 발령 때에도 어려운 시민 및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체의 경제적 피해 완화를 위해 하수도 감면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주요내용

- 『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』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 위기의 경보발령 때에도 하수도요금 감면 규정을 신설(안 제26조제1항제2호)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함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: 생략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생략

5. 토론 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